제 1348 호

1987.3.12

발행인 : 서울특별시장 염 보 현
편집인 : 공 보 관 김 성 순
전 화 : 731-6111~3
인 쇄 : 서울특별시 종합발간실
전 화 : 735-3337

시 보

차 례

◎ 공문시행

물품관리전환소요조회 ········· 3

◎ 훈 령

제 645 호 : 서울특별시위임전결규정중개정규정 ········· 3

◎ 구고시

동작구제 5 호 : 도시계획사업 (공용의청사) 준공 ········· 4

(이면계속)

공람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 공 고

제 152 호 : 관인폐기 …… 4
제 155 호 : 세입징수관공인신고및폐기 …… 5
제 156 호 : 회계관계공무원직인등록 …… 6
제 160 호 : 도시계획사업시행 (도로) 공람 …… 6
제 161 호 : 도시계획사업시행 (도로) 공람 …… 7
제 162 호 : 도시계획사업시행 (도로) 공람 …… 7
제 163 호 : 도시계획사업시행 (도로) 공람 …… 8
제 164 호 : 도시계획사업시행 (도로) 공람 …… 9

◎ 구 공 고

마포구제 20 호 : 도시계획사업 (시장) 시행허가에따른공람 …… 9

◎ 사 령

공 문 시 행

물품관리전환소요조회

종합민원실에서 보유하고 있는 아래물품에 대하여 물품관리법 제19조에 의거 관리전환코저 하오니 희망부서에서는 '87. 3. 18까지 종합민원실장 앞으로 관리전환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관리전환대상물품명세서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금 액	비고
전자복사기	IT-5300	대	1	2,960,000	

서울특별시 위임전결규정중개정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1987 년 3 월 12 일

서 울 특 별 시 장　염 보 현　인

훈 령

◎서울특별시훈령 제 845 호

서울특별시위임전결규정중개정

서울특별시위임전결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건설관리국중 제 43 호내지 제48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국 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건 설 관리국	43. 재개발조합의 설립인가	• 도시재개발법 제 17 조 • 동법시행령 제 58 조제 1 항제 7 호	구 청 장
	44. 재개발사업시행 및 변경의 인가와 그 중지 또는 폐지의 인가등의 고시	• 도시재개발법 제 15 조 • 동법시행령 제 58 조 제 1 항 제 15 호	〃
	45. 준공검사, 검사필증의 교부 또는 공사의 완료공고	• 도시재개발법 제 48 조 제 2 항 및 제 3 항 • 동법시행령 제 58 조 제 1 항 제 13 호	
	46.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그 변경인가와 의견청취	• 도시재개발법 제 41 조 • 동법시행령 제 58 조 제 1 항 제 12 호	〃
	47. 재개발사업의 시행 및 인가와 그 중지 또는 폐지의 인가	• 도시재개발법 제 12 조, 제 17 조, 제 30 조, 제 32 조 및 제 33 조 • 동법시행령 제 58 조 제 1 항 제 5 호, 제 7 호 및 제 9 호내지 12 호	
	48. 비용부담에 관한 주무부장관의 의견청취 및 부담금 결정	• 도시재개발법 제 58 조 • 동법시행령 제 58 조 제 1 항 제 14 호	〃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구 고 시

◎동작구고시제 5 호

도시계획사업 (공용의청사) 준공

1. 서울특별시 고시 제753호(84.12.13)로 도시계획사업 (공용의 청사) 시행인가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준공처리 되었기 도시계획법 제85조 및 동법시행령 제66조의3,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동작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인다.

1987. 3. 12.

동 작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72-35 일대

나.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사업 (공용의 청사) —노량진경찰서

다. 사업의 규모 : 대지면적—4,789㎡

라.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장 (노량진경찰서장)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일

- 착수일 : 84.12.13
- 준공일 : 86.12.31

공 고

◎서울특별시공고제 152 호

공 인 폐 거

제101,203,206 전투경찰대장의 직인을 서울특별시 관인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함을 동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다.

1987. 3. 12.

서 울 특 별 시 장

1. 폐기일자 : 87.3
2. 폐기직인 : 제 101 전투경찰대장인
   제 203 〃
   제 206 〃

폐 거 인 영

인 영	
공인명	제 101 전투경찰대장인

인 영	
공인명	제203 전투경찰대장인
인 영	
공인명	제 206 전투경찰대장인

◎서울특별시공고제 155 호

세입징수관공인신조및폐기

서울특별시 세입징수관 공인을 아래와 같이 신조(폐기)하여 서울특별시 회계현재 공무원 직인 규칙 제7조 및 제9조에 의거 등록하고 서울특별시 관인 규칙 제6조에 의거 공고한다.

1987. 3. 12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인명 :
서울시립대학 징수관인　　폐 기
〃 수입금출납원 〃
서울시립대학교징수관인　　신 조
〃 수입금출납원 〃
2. 사용개시(폐기)일자 : 1987. 3.
3. 공인의 인영 : 별 첨

인 영 대 장(폐기)

인 영		
공인영	서울시립대학징수관인및수입금출납원인	

인 영 대 장(신조)

인 영		
공인영	서울시립대학교징수관인및수입금출납원인	

◎ 서울특별시공고제 156호

일반회계건설부서울특별시분임세입징수관신조등록

서울특별시 건설부소관 회계관계공무원 직인을 서울특별시 회계관계공무원 직인규칙 제7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신조 등록하고 동규칙 제11조에 의거 이에 공고한다.

1987. 3. 12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인명 : 일반회계 건설부 서울특별시 분임세입징수관
2. 사용개시일 : '87. 3.
3. 공인의인영 : 별 첨

인 영 대 장

인 영	
공인명	일반회계 건설부 서울특별시 분임 세입징수관인

◎서울특별시공고제 160호

도시계획사업시행(도로)공람

1. 서울특별시고시 제 207호('73.12.24)로 시설결정하고 서고제 207호('73.12.24)로 지적승인된 신림2동 109-1~108-114간 도로개설 공사를 위한 도시계획사업을 시행코자 도시계획법 제25조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 한다.
2.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통지 할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같음한다.
3. 관계도서는 관악구청 토목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7. 3. 12
서 울 특 별 시 장

가)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2동 109-11~108-44
나) 사업의종류및명칭 : 도시계획사업 (신림2동 109-1~108-44간 도로개설공사 시행)
다) 사업규모 : B=6m, L=80m
라)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장(관악구청장)
마) 사업의착수 및 준공예정일 : 사업시행인가일로 부터 '87.12.31일까지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지목 및 소유권 권리명세 : 별첨
사) 토지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 조 3 항의 관계인의 주소, 성명 : 별첨
아)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 일간
자) 기타사항 : 의견 및 상세한 사항은 상기 공람장소에 제출 또는 문의 하기 바람.

◎서울특별시공고제 161 호

도시계획사업시행 (도로) 공람

1. 서울특별시고시제 428 호 ('78.8.15)로 시설결정하고 서고 제 428 호 ('78.8.15)로 지적승인된 봉천동 당곡국민학교진입로외 1 개소 주변 도로개설공사를 위한 도시계획사업을 시행코자 도시계획법 제 25 조 2 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 한다.
2.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통지 할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한다.
3. 관계도서는 관악구청 토목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7. 3. 12.
서 울 특 별 시 장

가)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봉천동 702-76~ 698~5, 708-9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사업 (봉천 1 동 당곡국교진입로외 1 개소 도로개설공사) 시행
다) 사업규모 : B = 8m, L = 112m, B = 6m, L = 13m
라)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장 (관악구청장)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87.12.31 일까지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지목 및 소유권 권리명세 : 별첨
사) 토지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 조 3 항의 관계인의 주소, 성명 : 별첨
아)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 일간
자) 기타사항 : 의견 및 상세한 사항은 상기 공람장소에 제출 또는 문의하기 바람.

◎서울특별시공고제 162 호

도시계획사업시행 (도로) 공람

1. 서울특별시고시제 207 호('73.12.24)로 시설결정하고 서고제 207 호('73.12.24)로 지적승인된 신림 2 동 96-44~98-32 간 도로개설공사를 위한 도시계획사업을 시행코자 도시계획법제 25 조 2 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람 공고한다.
2.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한다.

3. 관계도서는 관악구청 토목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7. 3. 12.
서 울 특 별 시 장

가)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 2동 96-44~98-32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사업 (신림 2동 96의 44~98의 32간 도로개설공사) 시행
다) 사업규모 : B=6m, L=160m
라)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장 (관악구청장)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87.12.31까지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지목 및 소유권 권리명세 : 별첨
사) 토지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3항의 관계인의 주소, 성명 : 별첨
아)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자) 기타사항 : 의견 및 상세한 사항은 상기 공람장소에 제출 또는 문의 하기 바람.

◎서울특별시공고제163호

도시계획사업시행 (도로) 공람

1. 서울특별시고시제 16호 ('86.1.11)로 시설결정하고 서고제57호 ('86.1.27)로 지적승인된 봉천7동 강감찬 유허비 진입로 주변 도로개설공사를 위한 도시계획사업을 시행코자 도시계획법 제25조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 한다.
2.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통지 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한다.
3. 관계도서는 관악구청 토목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7. 3. 12.
서 울 특 별 시 장

가)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215-3~218-14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사업 (봉천 7동 강감찬 유허비 진입로 개설공사) 시행
다) 사업규모 : B=4m, L=35m
라)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장 (관악구청장)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87.12.31. 까지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지목 및 소유권 권리명세 : 별첨
사) 토지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3항의 관계인의 주소, 성명 : 별첨
아)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자) 기타사항 : 의견 및 상세한 사항은 상기 공람장소에 제출 또는 문의 하기 바람.

◎서울특별시공고　제 164 호

도시계획사업시행(도로)　공람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102 호 (80. 4. 24)로 시설결정하고 서고 제 102 호 (80. 3. 24)로 지적승인된 봉천10동 신봉국교 주변 도로개설공사를 위한 도시계획사업을 시행코자 도시계획법 제 25 조 2 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 한다.
2.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통지 할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한다.
3. 관계도서는 관악구청 토목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7. 3. 12
서 울 특 별 시 장

가)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사업 (봉천10동 신봉국교주변 도로확장공사)
다) 사업규모 : L = 120 m B = 6 m
　　옹벽부분 L = 117.5 m
　　콘크리트포장 A = 5,64 a
라)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장
　　(관악구청장)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87. 12. 31까지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축 및 소유권 권리명세 : 별첨
사) 토지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3 조 3 항의 관계인의 주소, 성명 : 별첨
아)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자) 기타사항 : 의견 및 상세한 사항은 상기 공람장소에 제출 또는 문의하기 바람.

구 공 고

◎마포구 공고 제 20 호

도시계획사업 (시장) 시행허가에 따른 공람

1. 서울특별시 공고 제 5 호 (67. 1. 18)로 환지확정 처분시 도시계획시설(시장)로 확보한 우리구 관내 서교동 357-1 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 (시장) 시행 허가하고자 도시계획법 제 25 조의 2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 조의 2 규정에 의거 공람공고 한다.
2. 관계도서는 마포구청 산업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니 의견이 있을시는 공람기간내에 의견서를 공람장소에 제출하기 바란다.

1987. 3. 12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가. 사업시행지 : 마포구서교동 357-1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 사업(시장) 서교시장신축
다.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중구 회현동 181-1 ㈜부성건설 대표이사 성 부 중
라. 사업시행면적
· 대지면적 : 2,644.6㎡
· 건축면적 : 1,314.24㎡
· 건축연면적 : 12,327.31㎡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 연월일 : 허가일로부터 - 86.4.30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마포구서교동	357-1	대	2,644.6㎡	향우물산㈜	없음

사. 공람기간 : 1987.3.12~ ~1987.3.25 (14일간)
아. 공람장소 : 마포구청 산업과
자. 기타 : 상세한 내용과 의견은 마포구청 산업과에 문의 또는 제출하기 바란다.

사 령

◎1987년 3월 10일자 령제 62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백훈기	강남구	운영과	지방별정직 7급상당
이재덕	대현산배수지사무소	도봉구	〃

◎1987년 3월 12일자 령제 64호

성명	발령사항	부서	직급
이복동	건설행정과	구획정리과	지방행정서기

◎1987년 3월 10일자 령제 65호

비상기획위원회 조사연구실 제1부장
2급상당 김진천 서울특별시 민방위국장(2급상당)에 임함.
대통령

◎1987년 3월 7일자 령제 65호

성명	발령사항	부서	직급
전형문	내무국	도봉구	지방행정사무관

서울특별시장